
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사업화 지원 운영 지침

2024. 5.

1. 사업 목적

- 서울시 주요 혁신 거점의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간 소통 및 연계를 활성화하고, 산업간 융·복합 가능성 타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운영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거점 주체들이 참여하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사업화 지원
-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4. 12. 20. (예정)
 - ※ 지원기간은 협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대상: 市 6대 산업거점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-연구소-대학-병원간의 컨소시엄
 - 市 6대 산업거점에 입주 중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
 - 2개 이상의 거점 내 또는 하나의 거점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산·학·연·병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
 - 동일 기관이 2개 이상 컨소시엄으로 참여 불가
 - ※ 서울 6대 혁신 거점: 마곡, DMC, G밸리, 홍릉, 양재, 여의도(*제2핀테크랩 입주기업 포함)
 - ※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6대 거점 내 입주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
- 지원제외 대상
 -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아닐 경우
 -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해당 산업거점에 입주해 있지 않을 경우
 - 접수과제의 내용이 타 사업·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 - 최종 산출물이 기 지원·제작·생산·판매중인 제품과 서비스일 경우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
 -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'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'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
 -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일 경우
- 지원규모: 총 2억 4천만원 (프로젝트 당 최대 4천만원)

□ 지원방법: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

-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금 지급, 총 사업비의 10% 이상 민간부담금(현금) 구성

□ 운영내용

- 서울시 6대 산업거점에 입주해 있는 산·학·연·병 컨소시엄의 공동 기술 개발 지원

3. 선정·평가 및 사업운영 계획

모집 및 선정

□ 모집기간: 2024. 5. 13.(월) ~ 6. 5.(수)

□ 신청자격: 市 6대 산업거점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-연구소-대학-병원간의 컨소시엄

- 2개 이상의 거점 내 또는 하나의 거점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산·학·연·병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
- 동일 기관이 2개 이상 컨소시엄으로 참여 불가

- 컨소시엄 구성 예시

- ▶ 홍릉(바이오) + 마곡(R&D): 바이오·제약 관련 스타트업 + 기업연구소 + 병원 등 연계
- ▶ 여의도(핀테크) + G밸리(IT): IT 관련 기업 + 핀테크 스타트업 연계

-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자격

-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6대 거점 (마곡·DMC·G밸리·여의도·홍릉·양재)에 소재하거나 혹은 6대 거점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산업체/대학/연구소/병원

※ 사업자등록증 상,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

※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6대 거점 내 입주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

※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 포함

- 과제(부문)책임자의 자격

- 과제책임자: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 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부문책임자: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, 전임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, 연구자 등

□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,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반서류 각 1부
- 발표자료 (자유양식) 1부

□ 서면평가: 서류평가를 통한 대면평가 대상기업 선정

- 심사항목: 사업신청서 기반 제출서류 확인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등 심사
- 선정방법: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전문가 서면평가 진행
- 평가 결과 적격 컨소시엄 없을 시 수시접수 통한 추가모집 가능
- 평가요소 및 배점

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	▶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▶ 컨소시엄 참여기업 보유 인력, 장비, 특허, 경력의 적정성 ▶ 컨소시엄 참여기업(연구소·병원 포함) 간 역할 분담 적정성	60
사업계획의 적정성	▶ 관련 시장동향 등 추진 배경의 적정성 및 조사의 충실성 ▶ 사업추진 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	40
합계		100

- 평가결과: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통과
- 선정결과: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개별 안내

□ 대면평가: 발표평가(PT)를 통한 상위점수 순 최종 선정

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컨소시엄 추진 역량	▶ *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▶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및 사업 참여 의지 ▶ 컨소시엄 참여기업(연구소·병원 포함) 간 역할 분담 적정성	40
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	▶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 ▶ 추진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▶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▶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	30
성과 창출 가능성	▶ 사업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▶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성 (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)	30
합계		100

※ 컨소시엄 추진 역량: 컨소시엄 참여기업(대학·연구소 포함)이 상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구조(Win-Win)로 설계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며, 컨소시엄 추진 역량 지표가 미흡할 경우 타 지표와 무관하게 지원 제외

※ 동점 발생 시, 2개 이상의 거점에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/ 이후 성과 창출 가능성, 컨소시엄 추진 역량 순으로 우선 선정

※ 선정 중 협약 체결 포기, 중도 포기 등 잔여분 발생 시 차순위 프로젝트 지원

관리 및 운영

□ 협약체결

- 협약기간: 협약체결일 ~ 2024. 12. 20.(예정)
- 사업기간, 사업비 지급, 협약변경 및 해약, 사업비 정산 및 환수, 평가 및 발표회 운영 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
- 컨소시엄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: 협약 체결은 컨소시엄 주관기관과 수행하므로,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협약 후 협약서 제출
 - ※ 공동 개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소유권 협의 및 책임은 주관기관에 귀속
-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사업의 과제책임자는 연구 활동 및 운영·정산 등을 담당
 - ※ 과제책임자는 주관기관에서 선출
- 구비서류: 협약서 및 관련 구비서류,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
 - 협약서 및 관련 구비서류
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(보증기간: 협약기간+2개월): 서울보증보험, 보증액 40,000천원

□ 사업비 지급

-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 명의 사업비 통장으로 총 사업비 90% 일시 지급
- 최대 총 40,000천원 내외(협약체결 후 총 사업비의 90% 이내)
 - ※ 부가세,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
 - ※ 민간부담금(현금): 총 사업비의 10% 이상

□ 중간점검

- 일정: 2024. 9월 중
- 점검내용: 프로젝트 수행 시 애로사항 및 수행과정 보완 필요 사항 등 의견 수렴
- 수행내용: 과제 진행률, 컨소시엄 운영 현황 점검 및 과제 진행 시 애로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

□ 최종 평가

- 일정: 2024. 12월 중
- 평가방법: 대면평가
- 평가기준: 심사위원 7인의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

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목표 달성도	▶ 최초 제안한 프로젝트 목표에 따른 최종 성과	30

		-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 목표 달성도 -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	
수행 적정성	거점 연계	▶ 컨소시엄 참여기업(주관·협력 기관)의 사업 참여 적극성 ▶ 컨소시엄 운영의 효과성	20
	기술 개발	▶ 연구 성과에 따른 결과물의 우수성 ▶ 기술개발 정도 및 활용 가능성	20
프로젝트 확산 가능성		▶ 사업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 - 완성된 연구 결과물 및 기술의 확산 가능성 - 프로젝트의 상용화 계획과 가능성 ▶ 추후 사업의 고도화 가능성	30
합계			100

- 평가결과 판단기준

구 분	평가점수	세부 기준	비 고
성공 수행	70점 이상	• 계획서에 제출한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거나 대부분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프로젝트	성공종료, 사업비 정산 및 지원종료
성실 수행	60점 ~70점	•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과정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최종점수가 60~69점인 프로젝트	사업비 정산 및 지원종료
불성실 수행	60점 미만	•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, 귀책사유가 수행기관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프로젝트	정밀 실태조사 및 부당집행금액 환수

※ 평가위원회는 결과보고서, 대면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심의

□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

-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: 협약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이메일 제출
- 접수서류: 최종 결과보고서(별도 서식) 및 증빙자료 등
 - 공동 기술 개발 결과 보고 시 개념검증 이상의 성과 도출 필요
(ex. 특허출원, 시작품, 시제품 제작, 임상 등)
- 사업비 정산: 서울경제진흥원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
 - ※ 사업비 정산 후 불인정 금액 및 이자액 반납 처리

□ 성과 발표회 운영

- 일정: 2024. 12. 중(예정)
- 내용: 각 컨소시엄별 협력사업 결과 발표 및 각 거점 운영기관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추진

4. 사업비 사용 개요

□ 사용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4. 12. 20.(예정)

□ 사업비 지급방법

- 사업운영협약 및 사업계획 적절성 확인 후 사업비 지급
-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지급
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기간: 협약기간+2개월): 서울보증보험, 보증액 40,000천원

□ 사업비 용도: 컨소시엄의 공동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

- 사업비 편성 및 사용기준

분류	비목	편성기준	편성한도						
공통	인건비	● 선정기업에 소속되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- 선정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(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 〈인건비 산정기준〉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세부 산정기준</th></tr><tr><td>연봉제 적용기관</td><td>연봉제 급여총액/12 * 참여기간 * 참여율</td></tr><tr><td>연봉제 비적용기관</td><td>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* 참여기간 * 참여율</td></tr></table> ※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최근 월 평균급여액 × 참여기간 × 참여율로 산정 ※ 개인사업자의 급여총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되, 소득이 없거나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준하여 선정	구 분	세부 산정기준	연봉제 적용기관	연봉제 급여총액/12 * 참여기간 * 참여율	연봉제 비적용기관	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* 참여기간 * 참여율	총 사업비의 40% 이하
		구 분	세부 산정기준						
		연봉제 적용기관	연봉제 급여총액/12 * 참여기간 * 참여율						
		연봉제 비적용기관	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* 참여기간 * 참여율						
국제화 여비	● 컨소시엄의 ‘업무수행관련’ 해외 여비 - 항공/숙박비: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 관련 비용으로 출장자는 컨소시엄 참여 임직원만 해당 - 항공비 및 숙박비 외 집행 불가(숙박 부대시설 요금, 회의비, 접대비, 거마비 등 제3자 관련 비용, 주차 요금, 택시 등 기타 교통요금 등)	총 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
	무형 자산 취득비		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/고도화와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, 특허, S/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·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-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선정기업 법인명의로 출원·등록해야 함 ※ 단,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						
	재료비	●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(내구연수 1년 이하) - 재료는 사업종료 10일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함 - 시작품, 시제품, 실험설비의 자체 제작은 인건비, 재료비 등으로 산정하고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위탁사업비로 산정							

공동 기술 개발	시험 분석/ 인증비	● 사업화/고도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 시스템·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- 제품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집행 - 시스템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집행. 시스템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※ 협약종료일 이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건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	
	운영 경비	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-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과 사용하는 회의비, 사업과 관련된 인쇄·복사 등 수행계획서상 반영된 과제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산정 ※ 회의비 기준(1인당 1회 3만원 이내), 다과비(1인 당 1회 5천원 이내) ※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 필수 첨부 - 회계정산수수료, 지급이행보증보험료 등	총 사업비의 20% 이하
	위탁 연구 개발비	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하는 경비 - 사업수행과 관련 임상·시험비 및 시험분석료, 시제품·시제품·시험설비 제작, 컨설팅 등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	총 사업비의 20%이하

※ 편성 한도는 상기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유를 포함하여 별도 기재하고, 선정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결정

※ 과제수행 완료 후 회계법인 정산을 통한 사업비 사용 적정성 확인

□ 사업비 지급 제외 사항

- 단순 기업운영 비용 및 기술 또는 상품(서비스)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은 지원 제외
-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만 사업비로 사용 인정
- 주관기관 법인카드, 현금(세금계산서, 입금증)사용분만 인정
-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제외
- 자산 취득비용,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
-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항목

5. 사업비 환수 기준

환수 기준	분류	환수 사유
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	불성실 수행	① 컨소시엄의 불성실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기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,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미 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
	중도 포기	③ 컨소시엄의 합의에 의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
	기타	④ 기타, ①~③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, 컨소시엄의 계속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
부당지출액 환수		① 본 사업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한 경우 ② 지급기준 위배, 불명확하게 지출한 경우 ③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항목

[별첨 1] ※ 사업 선정 후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관기관-협력기관 간 협약 진행 및 협약서 제출

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지원 협약서

[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협약용]

□ 사업명:

□ 프로젝트명 :

□ 사업/협약기간 :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(개월)

□ 협약당사자

(주관기관) 주관기관명 (대표자) 대표자 명

과제책임자: (소속) (직위) (성명)

(협력기관) 협력기관명 (대표자) 대표자 명

부문책임자: (소속) (직위) (성명)

위 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사업의 목표 및 내용)

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(이하 '수행계획서'라 한다) 상의 사업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.

제2조(사업의 수행)

- ① 협력기관과 부문책임자는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, 관련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첨부된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기간 중 분기별로 협력기관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기관은 사업수행포기·부도·법정관리·폐업위기·사업승계·전담연구원 변동여부(퇴사)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)

- ① 협력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한 당해연도 사업비의 현금(금_____원)을 평가·관리전담기관(이하 ‘전담기관’이라 한다)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, 사업계획서 이외의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지원 사업비 사용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기관은 사업비 집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·출금하여야 하며 통장사본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고서 제출 협조)

- ①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이 각종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제출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비의 정산)

- ①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받은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요청 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 시 주관기관을 대신하여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거나, 사업비 정산잔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기관은 전 사업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주관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기관과 부문책임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를 주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 종료 또는 협약해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 협력기관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⑤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 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⑥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 및 해약)

- ①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간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,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협약도 함께 해약되며,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기술개발에 따른 유·무형적 결과물의 소유)

- ①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, 시설,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의 취득에 대한 책임 및 협의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협력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은 협력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.
- ②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판권, 브랜드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는 상호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
 - 1. 협력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
 - 2.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
 - 3. 공동 브랜드 등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경우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의 소유로 할 수 있다.
 - 1.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2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.
단,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.
 - 3. 그 밖에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협력기관은 2024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지원 사업의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·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

다.

1.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2. 지식재산권을 국내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지자체명(서울특별시), 연구관리 전문기관(서울경제진흥원), 연구사업명, 연구과제명, 기여율(1/1), 주관기관명, 연구기간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참여기관의 임직원, 과제책임자, 사업참여자 등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.
- ⑤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한 유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결과의 활용에 대한 협조)

- ① 협력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결과 및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관련규정의 준수)

-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공고 및 협약서, 관련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협력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이 체결한 협약내용을 우선하여 준수하고 주관기관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약의 효력)

협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12조(기타)

- ① 협약서(첨부 포함)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주관기관, 협력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- ② 협력기관과 부문책임자는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'2024년도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사업화 지원 사업'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제13조(해석)

협력기관은 협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 및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내용을 따른다.

첨부 1. 수행계획서 1부.

2024년 월 일

주관기관(주관기관명) 대표이사 (직인)

과제책임자 (인)

협력기관(협력기관명) 기관장명 (직인)

부문책임자 (인)

협약서 작성요령

1. 본 협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상대방에게 공지하여야 함
2. 첨부 서류는 협약 당사자 간 필요한 서류만 작성 하며, 필요 시 추가도 가능
3. 본 협약서의 표준서식 중 협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문구는 모두 삭제
4. 본 '협약서 작성요령' 등 안내문구 삭제